
Policy and Law Report _Vol.13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5.09.~ 2022.05.15) -

May 16,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고용 노동부	<p>•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p> <p>고용노동부는 추경예산안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8,611억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함</p> <p>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111억원, 70만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 ※ 1차 추경 집행 잔액<1,000억원>을 활용하여 10만명 추가 지원 예정 - (지원규모) 1인당 100만원 - (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없이 100만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p>②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1,500억원, 7.5만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 (지원규모) 1인당 200만원 지급 	2022-05-12

부처	내용	일시
국회 입법 조사처	<p>•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p> <p>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사례 분석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가상자산 소득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도입되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확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1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아 가상자산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임 - 2023년 시행을 앞둔 현재 가상자산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기본공제 250만원의 적정성, 가상자산 손익통산 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여부 등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p>②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를 분석하고, 주식 등 금융상품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함께 비교하여 조세 목적상 가상자산소득을 금융상품 양도소득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지 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는 가상자산소득을 자본이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반면, 독일, 일본은 가상자산소득을 일반적인 자본이득과 상이하게 기타소득 및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지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율을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달리 가상자산소득을 중과세하고 있지 않음 -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형평상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할 필요가 있으나,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되 기본공제 250만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022-05-12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청법 일부개정」 (2022.9.10. 시행 예정) <p>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p> <p>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p>	2022-05-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2.9.10. 시행 예정) <p>검사는 송치요구 등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려는 것임</p>	2022-05-0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p>•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5.9. 시행)</p> <p>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가액(價額)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의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가액 산정 방법 합리화 (제27조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정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70퍼센트 이상을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그 영업인가 등이 취소될 수 있는 바,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금액은 총자산에는 포함되나 부동산 자산에는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자산에서 임대주택의 비중이 높거나 일시적으로 임대보증금 수입이 급증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부동산 자산 구성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 앞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주택 운용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완화함 <p>②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취소 예외사유 추가 (제43조의2제1항제2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정상 자산관리회사는 자기자본이 70억원 미만으로 되는 경우 그 인가가 취소되는 바, 사업 개시(開始) 초창기이거나 일시적인 자산운용 실적 악화로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그 원인에 대한 고려없이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가 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기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개 회계연도 이내인 경우나 그 기간이 단일 회계연도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산관리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함. 개별공시시가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등 적정 임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022-05-09
금융 위원회	<p>•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5.9. 시행, 일부조항은 2022.6.8. 시행 예정)</p> <p>동일인이 은행 주식보유상황 등을 보고해야 하는 기간을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하고,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미합중국 화폐 2천달러 미만의 경미한 금전 제재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하여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p> <p>은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취득 또는 보유가 금지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보고의 접수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려는 것임</p>	2022-05-09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기획재정부</p>	<p>•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매물출회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양도기한 등 요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과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안 제154조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는 규정을 삭제함 <p>②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안 제155조제1항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p>③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 한시 배제 (안 제167조의3제1항제12의2호, 제167조의4제3항제6의2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과를 배제함 <p>※ 의견 제시기간 : 5/10(화)~5/17(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로 제출</p>	<p>2022-05-10</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p> <p>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격점검 결과 등 대국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자료활용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2 신설) ② 효율적 원격점검 운영·관리를 위해 '관제센터' 위탁 근거 마련 (안 제17조제3항제6호 신설) ③ 안전점검 결과 등 고지에 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 18조) ④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 정비 (안 별표 5) <p>※ 의견 제시기간 : 5/6(금)~5/3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로 제출</p>	2022-05-06
	<p>•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해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원격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 12조제3항) ②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 조정 (안 제12조의2 신설)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주택 등 주거용설비는 현장(정기)점검으로 대체하고, 비주거용설비(학교 등)의 현장점검 주기는 5년으로 완화 ③ 원격점검 장치로부터 수집된 측정 데이터 등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제센터'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의3 신설) ④ 공동주택 세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원격점검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에 따른 시기·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 (안 제20조제2항) ⑤ 원격점검 도입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관련규정 정비 (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별표5) <p>※ 의견 제시기간 : 5/10(화)~6/9(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로 제출</p>	2022-05-1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p>•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에서 조합 설립·취소 절차 및 사업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 등을 신설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 규정 삭제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절차 보완 (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달성 후 개최하는 창립총회 절차 및 의사 결정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②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설 (안 제21조의4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이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으로 인가 취소 가능하도록 규정함 ③ 사업시행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 규정 (안 제21조의5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 등은 허가가 불필요한 행위로 규정함 ④ 조합원 자격 기준 보완 (안 제22조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과열지구 내 투기목적이 없는 실거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소유·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사업 지연이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 자격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⑤ 소규모재개발사업 사업요건 완화 (안 제3조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기준을 사업시행구역의 절반 이상이 포함된 경우로 명확화하고, 사업시행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상향함 ⑥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완화 (안 제29조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상한을 삭제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 ⑦ 자료의 보관 등 규정 보완 (안 제44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등이 청산시까지 보관해야 할 '중요한 회의'로 용역계약·업체선정 회의, 조합 임원 등 선임·해임·징계 회의 등을 규정함 	2022-05-1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⑧ 빈집 실태조사 내용 보완 (안 제6조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빈집 발생이유, 방치기간 등 빈집 현황에 대한 소유자 의견 조사 항목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 <p>※ 의견 제시기간 : 5/11(수)~6/2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제출</p>	
국토 교통부	<p>•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① 조합 해산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관련 서식 신설 (안 제9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의 해산 승인 신청서, 조합설립인가 취소 전 업무 시정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서, 조합설립인가 취소통지서 등을 규정함 <p>②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간이공작물 종류 규정 (안 제9조의 3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하우스,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퇴비장, 탈곡장 등 허가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의 종류를 규정함 <p>※ 의견 제시기간 : 5/11(수)~6/2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제출</p>	2022- 05-11
	<p>•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데이터센터는 최근 그 개소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교통유발계수가 없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 및 방송통신시설 중 전신전화국 등 서로 다른 계수를 적용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 중으로 데이터센터의 교통유발량을 고려한 적정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함으로써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p> <p>① 교통유발계수에 데이터센터 항목 및 계수 신설 (별표 4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시설(대분류) 하에 데이터센터(세분류)를 신설하고, 도시규모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설정 <p>※ 의견 제시기간 : 5/13(금)~6/23(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p>	2022- 05-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해양수산부	<p>•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 <p>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 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자원 재순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수산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음</p> <p>이에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18호, 2021. 7. 20. 공포, 2022.7.21.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안 제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은 패류 중 굴, 전복(오분자기 포함),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 바지락, 키조개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내용물을 제거한 껍데기로 함 <p>②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안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각 등 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을 운영하며 제2조에 따른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식품위생법」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며 제2조에 따른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를 분리배출의무자로 정함 <p>③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안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배출의무자는 부산물을 종류별로 수집·운반·보관하고,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함. 부산물이 누출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보관가능 장소 외에 보관하지 않으며, 재활용하려는 자가 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함 <p>④ 처리업 허가기준 (안 제1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보관설비 등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전문인력 등 인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p>⑤ 행정처분(안 제12조), 과징금(안 제14조) 또는 과태료 안 제1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2022-05-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해양수산부	<p>※ 의견 제시기간 : 5/13(금)~5/31(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로 제출</p> <p>•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 <p>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안 제2조 및 별표 1) - 연안환경개선·해양정화를 위한 재료, 제철소 소결제·탈황제 등 석회석 대체재, 건설자재 혼합원료 및 인공어초,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을 정하고 유형별 재활용 방법 등을 정함</p> <p>②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안 제3조) -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수산부산물 종류별 발생현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체 현황,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현황,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p> <p>③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신청 (안 제4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해야 함</p> <p>④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안 제7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일로부터 30일 전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p> <p>⑤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의 지원 (안 제8조)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중간처리업자가 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따른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음</p> <p>※ 의견 제시기간 : 5/13(금)~5/31(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로 제출</p>	2022-05-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식품 의약품 안전처</p>	<p>•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하는 한편,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1일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 (안 별표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 <p>② 행정처분 기준 정비 (안 별표 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식품을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위반사항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p>※ 의견 제시기간 : 5/12(목)~6/21(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로 제출</p>	<p>2022-05-12</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공정거래 위원회	<p>• 「<u>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u>」</p>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2022. 7. 5.)에 따라 신설되는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외 가중·감경기준 등 전반적인 부과기준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기본 산정기준 (안 [별표]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 -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 <p>② 1차 조정 (안 IV.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판단기준시점, 대상기간, 제외대상 등을 정비함 <p>③ 2차 조정 (안 IV.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방해 행위, 고위임원의 직접 관여, 동일 유형 행위의 반복 위반 등 가중기준을 폐지함 - 조사 협력,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약식심의 결과 수락 등 감경 사유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 함 - 정부시책이 동인이 된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 감경기준을 폐지함 <p>④ 부과과징금 결정기준 (안 IV.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 기준시점을 심의일에서 의결일로 변경하고, 부채비율·당기순이익·잉여금·자본잠식여부 및 자본잠식률 등 구체적 기준에 따라 감경 비율을 정하도록 함 -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함 <p>※ 의견 제시기간 : 5/9(월)~5/3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로 제출</p>	2022-05-0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공정거래 위원회</p>	<p>•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미지급에 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8111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과 같이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매장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을 명확히 구분하며, 현행 인터넷쇼핑몰업자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 시 과징금 미부과 (안 별표1제1호나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금 미지급의 경우 당사자 간 금전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과징금 등 행정제재보다 자진시정 유도를 통한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금 미지급을 자진시정 할 수 있도록 하여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p>② 기타 용어 정비 (안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 안 제2조제3항, 안 제5조 제4호 및 제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약매입거래 등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우로만 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의 용어를 PC·모바일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함 <p>※ 의견 제시기간 : 5/4(수)~6/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로 제출</p>	<p>2022-05-04</p>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p>•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소포배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매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현재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가 없어 해당 과세자료의 허위제출 또는 미제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p> <p>이에 사업장제공자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장제공자등이 소득자료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장제공자 등이 용역제공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자료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려는 것임(안 제17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p>	2022-05-12
정무 위원회	<p>•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등 10인)」</p> <p>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최근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p> <p>그러나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p> <p>한편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증빙서류를 관리함으로써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p> <p>이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검토 등의 목적을 균형있게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신설 등)</p>	2022-05-09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1인)」</p> <p>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금융 디지털화의 가속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족,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p> <p>그러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에는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취약하고 금융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p> <p>이에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피해 사례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에 고령자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2 신설)</p>	2022-05-06
정무위원회	<p>•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p> <p>단기 요구불예금으로 장기대출을 주로 하는 은행업의 특성상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단기자금 운용이 필수적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은 「한국은행법」에 근거한 ‘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에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음</p> <p>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p> <p>이와 관련하여 ‘신용공여’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해석이 모호하고, 「한국은행법」 등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call loan) 등 일부 신용공여는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p>	2022-05-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p>•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p> <p>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조리사가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 판정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s)에 해당 조리사들이 장기간 노출된 것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음</p> <p>조리흄이라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리흄에 이들이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는 작업환경측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에 해당 작업장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p> <p>이에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미세입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급식실이 작업환경측정 의무 대상 작업장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125조제1항)</p>	2022-05-06
국토교통 위원회	<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 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p> <p>하지만 시공자 선정과정에 있어 선정되지 못한 건설업자가 본인을 지지했던 조합원들을 지원하여 각종 가처분 및 소송, 조합임원 해임 등 분열 일으켜 총회결과를 무효화 시키거나 재산정을 추진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조합원을 분열시키고 재개발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총회의 소집 요건에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제2항 후단 신설)</p>	2022-05-06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5/16(월) 10:00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대통령 시정연설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5/20(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88호 발간	
국회도서관	5/16(월)	「팩트북」 2022-2호(통권 제94호) 발간 - 디지털화폐	
	5/1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3호 발간 - 디지털자산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 입법례	
예산정책처	5/17(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 -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예비비 등	
	5/18(수)	2022 공공기관 분석보고서 발간 -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주중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발간 - 출연금의 개념 및 현황·주요쟁점분석·개선과제	
입법조사처	5/16(월) 14:00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역학과 과제」 세미나 개최 - 주최 : 이상민 의원실, 김정재 의원실, 국회입법조사	의원회관 1세미나실
	5/17(화) 09:00	「의회조사기구」 제11차 세미나 개최 - 참가국 : 22개국 의회조사기구(미국, EU 등)	온라인

[별첨1] 제397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기재위	5/17(화)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5/18(수) 14:00	예결산소위	추경안 심사
	5/18(수) 17:00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외통위	5/17(화) 14:00	전체회의	추경안 심사,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방위	5/17(화) 10:00	전체회의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추경안 심사, 현안보고
행안위	5/16(월) 본회의 산회후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5/16(월) 14:00	법안1소위	법안 심사
	5/16(월) 16:00	예결산소위	추경안 심사
	5/16(월) 18:00	전체회의	안건 의결
문체위	5/17(화)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5/18(수) 15:00	예결산소위	추경안 심사
	5/20(금)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농해수위	5/16(월) 14:00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5/17(화) 10:00	예결산소위	추경안 심사
	5/17(화) 16:30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복지위	5/17(화)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5/17(화) 소위 산회후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5/17(화) 14:00	예결산소위	추경안 심사
	5/18(수) 10:00	법안1소위	법안 심사
	5/18(수) 14:00	법안2소위	제정법률안 공청회
환노위	5/16(월) 13:30	전체회의	법안 의결, 추경안 상정
	5/16(월) 소위 산회후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5/16(월) 15:00	예결산소위	추경안 심사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국토위	5/16(월) 본회의 산회후	교통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5/17(화)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
	5/17(화) 전체회의 산회후	국토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5/18(수) 10:00	예결산소위	추경안 심사
	5/18(수) 소위 산회후	전체회의	추경안 의결, 법안 심사, 의견제시의 건
예결위	5/19(목)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심사
	5/20(금) 10:00	전체회의	추경안 심사
특별위	5/16(월) 14:00	전체회의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 간사 개선의 건, 자문위원회 중간보고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16(월) 14: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5/17(화) 14:00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 핀테크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김종민, 유동수,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5/18(수) 10:00	신정부 경제정책 포럼	서병수 의원실, 공감신문	의원회관 2세미나실
5/18(수) 10:00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과 활성화 과제	윤창현,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5/19(목) 14:00	(최인혁 교수 초청 토크콘서트) 新국제질서와 한국정치의 도전 - 복지 및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정치적 대응력 진단	송석준 의원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
5/20(금) 15:00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 - 무역 1조달러 시대, 간접수출 중소기업 역할을 재조명하다	김경만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외	의원회관 3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34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5/13(금)	「해의의회 포커스」 제87호 발간	
국회도서관	5/12(목)	「현안, 외국에선?」 제35호 발간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13(금) 13:00	새 정부 출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와 정책 방향	박성중 의원실, 한국기업법학회 외	의원회관 2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파트너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나인선** | 소속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김은혜** | 소속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